

호성첨단소재 주식회사

2019 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CREATIVITY
INSPIRED
HYOSUNG
HYOSUNG ADVANCED MATERIALS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I. 개요	1
II. 기업지배구조 정책	2
III. 주주	3
1. 주주의 권리	3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9
IV. 이사회	15
1. 이사회 기능	15
2. 이사회 구성	19
3. 사외이사의 책임	27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31
5. 이사회 운영	33
6. 이사회 내 위원회	38
V. 감사기구	44
1. 내부감사기구	44
2. 외부감사인	50
VI. 기타 사항(사회적 책임과 공헌 활동 및 기타 별첨 자료)	53

I

개 요

(1) 기업명 :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

(2) 작성 담당자 : (정) 안철무 과장 (부) 심재환 대리

(3) 작성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4) 기업 개요

최대주주등	(주)효성 외 7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44.41%
		소액주주 지분율	39.04%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타이어코드, 스틸코드, 산업용 원사, 카페트, 카매트, 아라미드 및 탄소섬유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효성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19년	2018년 6월 1일~12월 31일	
연결 매출액	30,536	17,675	
연결 영업이익	1,583	641	
연결 계속사업이익	▲529	▲237	
연결 당기순이익	▲529	▲237	
연결 자산총액	25,311	25,347	
별도 자산총액	11,114	12,084	

주 1)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임

주 2)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지분율은 2019년 말일 기준임

주 3)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효성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요약 재무현황은 2개 사업연도를 기재함

(1) 기업지배구조 정책 현황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산업자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Hyosung Way의 가치체계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고, 위원 과반수도 차지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는 참고서류 공시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의결 및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 기관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 또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는 회계사, 변호사, 과학자 등의 전문가들이며,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 및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542조의 4에서는 주주총회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현황 및 세부사항]

구 분	2020년 정기주주총회	2019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20년 2월 27일	2019년 2월 21일
공고일	2020년 2월 28일	2019년 2월 25일
주주총회 개최일	2020년 3월 19일(목)	2019년 3월 15일(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의 기간	주총 20일 전	주총 18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점 / 서울시 마포구	본점 / 서울시 마포구

구 분		2020년 정기주주총회	2019년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1% 미만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1% 미만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5명 중 2명 출석	5명 중 2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1명 출석 (대표감사위원)	3명 중 1명 출석 (대표감사위원)
	주주 발언 주요 내용	1) 발언 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1) 발언 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이며 회의 목적사항은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과 부의사항(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이었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서류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이사회 출석을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 포함)과 사외이사 보수현황을 기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으로서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되는 거래 및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내역도 기재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개요에서 업계의 현황과 회사의 현황, 시장점유율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등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 제공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

당사는 2018년 6월 1일 설립 이후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2019.3.15일, 2020.3.19일) 하였으며, 상기 표에서와 같이 주주총회 약 3주전 소집결의를 하고, 상법 제542조의4에서 규율하고 있는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완료하여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2020년 제2기 주주총회 20일전, 2019년 제1기 주주총회 18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사회 일정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공고를 최대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및 참석률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152조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한 사항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자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필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권유문서 등의 내용의 참고서류를 권유 행위 2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월 19일 개최되었던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67.9%의 참석률을 기록(제1기 정기주주총회 참석률 71.9%)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금번 제2기 정기주주총회도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지정한 집중 예상일(3월 13일, 20일, 26일, 27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서면/전자투표 실시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구 분	2020년 정기주주총회	2019년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0년 3월 13일, 2020년 3월 20일, 2020년 3월 26일, 2020년 3월 27일	2019년 3월 22일, 2019년 3월 28일, 2019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일	2020년 3월 19일	2019년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해당	해당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한편,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 사이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정기		제2기 주주총회			2020. 3. 19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찬성 주식수 (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2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468,022	3,034,132	2,961,289 (97.6%) 72,843 (2.4%)
제 2-1-1 호 의안	보통	황정모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4,468,022	3,034,132	2,958,674 (97.5%) 75,458 (2.5%)
제 2-1-2 호 의안	보통	김승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4,468,022	3,034,132	2,998,041 (98.8%) 36,091 (1.2%)
제 2-2-1 호 의안	보통	김동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4,468,022	3,034,132	2,999,788 (98.9%) 34,344 (1.1%)
제 2-2-2 호 의안	보통	한인구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4,468,022	3,034,132	2,968,377 (97.8%) 65,755 (2.2%)
제 2-2-3 호 의안	보통	이상엽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4,468,022	3,034,132	3,002,633 (99.0%) 31,499 (1.0%)
제 3-1 호 의안	보통	김동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2,528,878	1,094,988	1,064,595 (97.2%) 30,303 (2.8%)
제 3-2 호 의안	보통	한인구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2,528,878	1,094,988	1,029,233 (94.0%) 65,755 (6.0%)
제 3-3 호 의안	보통	이상엽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2,528,878	1,094,988	1,065,854 (97.3%) 29,134 (2.7%)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468,022	3,034,132	2,450,416 (80.8%) 583,716 (19.2%)

[제 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정기		제1기 주주총회			2019. 3. 15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찬성 주식수 (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1기(2018.06.0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468,022	3,223,079	3,146,041 (97.6%) 77,038 (2.4%)
제 2 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결	4,468,022	3,223,079	3,223,079 (100.0%) -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468,022	3,223,079	3,223,079 (100.0%) -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 2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심의해야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 조치한 사항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령상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사내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을 검토하여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 사이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주주제안 내역]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반대율(%)
해당사항 없음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제출 내역]

발송 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음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6월 1일 (주)효성으로부터 인적분할 이후 제1기(2018년 6월 1일~12월 31일) 및 제2기(2019년 1월 1일~12월 31일)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당정책, 향후 배당계획 및 이에 대한 주주안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 전입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향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투자, Cash Flow,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 결정 시, 관련 정보는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 통지서 발송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의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 전반에 관한 사항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대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투자, Cash Flow,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여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 내역]

(주, 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 기준	개별 기준
해당사항 없음									

한편 당사는 현재까지 차등 배당, 분기/중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조치사항

한편 당사는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 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정관 상 상법 제462조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배당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45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 등 주주환원을 할 수 없었으나, 향후 배당가능이익 발생 시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겠으며, 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주주 요청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 (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의 총 발행주식수는 4,479,948 주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식발행 현황]

구 분	발행가능주식수 (주)*	발행주식수 (주)**	비 고
보 통 주	150,000,000	4,479,948	자기주식 11,926 주 보유
종 류 주	50,000,000	-	해당 사항 없음
계	200,000,000	4,479,948	

* 발행가능 주식수 :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 발행주식수 :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 지 여부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별도의 IR팀이 없으나, (주)효성 IR팀과 협업하여 국내·아시아 지역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 (Non-Deal Road show)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야드 투어 개최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내용에 대한 소개 및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 사이 진행된, 주주와의 의사소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 자	대 상	형 식	주요 내용	비고
2019.1.30. ~ 2.1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8년 경영실적	국내NDR
2019.2.11. ~ 2.15	해외 기관투자자	IR	2018년 경영실적 및 분할 후 구조설명	해외NDR
2019.3.7	해외 기관투자자	IR	2018년 경영실적 및 분할 후 구조설명	Citi증권 컨퍼런스
2019.3.13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경영실적	한국투자증권 컨퍼런스
2019.5.7. ~ 5.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19.5.13.~ 5.1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19.5.22. ~ 5.24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IR	베트남 법인 Yard Tour	Yard Tour
2019.6.11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19.6.17~21	해외 기관투자자	IR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해외NDR
2019.6.25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IR	탄소섬유 기술세미나	흥국증권 컨퍼런스
2019.6.26~27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19.7.29~30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2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19.8.27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2분기 경영실적	키움증권 컨퍼런스
2019.11.4~5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19.11.20~22	해외 기관투자자	IR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해외NDR
2019.11.2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키움증권 컨퍼런스
2019.12.10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20.2.10~11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경영실적	국내NDR
2020.3.25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경영실적	키움증권 컨퍼런스콜
2020.3.26	국내 기관투자자	IR	2019년 경영실적	흥국증권 컨퍼런스콜
2020.5.11~12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2020.5.15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국내NDR

또한, 당사의 정보는 회사홈페이지(<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 및

DART(<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중문 홈페이지를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대·내외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공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영문)	주요 내용(한글)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아울러 정확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위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 사이 진행된, 당사의 공정공시 내역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19.01.31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 10~12월 연결손익 잠정실적 공시
2019.04.30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 1~3월 연결손익 잠정실적 공시
2019.07.26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 4~6월 연결손익 잠정실적 공시
2019.10.30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 7~9월 연결손익 잠정실적 공시
2020.02.05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 10~12월 연결손익 잠정실적 공시
2020.04.29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0년 1~3월 연결손익 잠정실적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 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해당사항 없음					

라.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

당사는 앞서 설명한 공시 및 NDR 외에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자료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재무·IR·공시·연차보고서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고객센터에 IR관련 문의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효성 IR팀 또는 당사 자금팀에 직접 메일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실적발표 자료 등의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하여 주주의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장치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승인요건은 재적인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50억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득한 뒤,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법 제542조의 9에서 규율하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최대주주인 (주)효성,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의 거래내역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해당거래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부거래 통제장치에 따라 진행된, 2019 사업년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채무보증 및 담보 내역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대상자	관계	채권자	채무내용	채무보증 및 담보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GST Automotive Safety(Changshu) Co., Ltd.	계열 회사	한국수출입은행외	시설자금외	채무보증	35,779	7,060	-	42,839
GST Global GmbH		Sindy Loan 외	운영자금외	채무보증	297,123	2,817	-	299,940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산업은행외	운영자금외	채무보증	85,126	10,132	-	95,258
Hyosung Luxembourg S.A.		신한은행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34,665	495	-	35,160
Hyosung Steel Cord (Qingdao) Co., Ltd.		한국수출입은행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105,314	5,200	-	110,514
Hyosung Vietnam Co., Ltd.		한국수출입은행외	운영자금외	채무보증	372,551	-	4,718	367,833
Hyosung Quang Nam Co., Ltd.		Sindy Loan 외	시설자금	채무보증	-	164,408	-	164,408
효성토요타(주)		한국토요타자동차	유형자산	담보	3,200	-	-	3,200
합 계					933,758	190,112	4,718	1,119,152

2)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2019년 기준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 내역과 2019년말 기준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법인	회사명	구 분			
		매출 등	배당 수익 등	매입 등	유무형자산 취득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기업	(주)효성	7,958	-	25,295	-
	소 계	7,958	-	25,295	-
종속기업	Hyosung Chemical Fiber (Jiaying) Co., Ltd.	10,783	16,148	30,583	-
	GST Global GmbH 등	72,138	-	3,748	-
	Hyosung Vietnam Co., Ltd.	123,954	43,322	122,206	-
	기 타	38,161	9,515	16,875	-
	소 계	245,036	68,985	173,412	-
기타 특수관계자	더클래스효성(주)	4,115	-	-	-
	공덕개발	-	-	1,908	2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	3	72
	신동진(주)(주2)	4,300	-	-	-
	기 타	-	-	-	-
	소 계	8,415	-	1,911	74
기타	효성티앤씨(주)	528	-	246,526	8
	효성중공업(주)	-	-	51	1,327
	효성화학(주)	345	-	-	-
	효성트랜스월드(주)	-	-	28,214	-
	Hyosung USA Inc.	150,076	-	1,226	-
	Hyosung Dong Nai Co., Ltd.	77,140	-	107,458	-
	Hyosung Japan Co., Ltd.	37,807	-	1,024	-
	Hyosung Singapore PTE Ltd.	46,896	-	-	-
	Hyosung Holdings USA, Inc.	27,352	-	-	-
	기 타	2,679	-	1,452	478
	소 계	342,823	-	385,951	1,813
합 계	604,232	68,985	586,569	1,887	

주 1) 매출·매입 등 : 매출 등에는 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등이, 매입 등에는 원재료 매입, 수출비, 지급 수수료, 기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2) 영업외이익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며 매매가액은 15,177 백만원입니다.

(기준일 : 2019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법인	회사명	구 분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기업	(주)효성	946	1,590	684	1,792
	소 계	946	1,590	684	1,792
종속기업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3,369	625	3,247	-
	GST Global GmbH 등	20,529	667	714	-
	Hyosung Vietnam Co., Ltd.	2,207	200	18,517	-
	기 타	1,782	51	1,443	22
	소 계	27,887	1,543	23,921	22
기타 특수관계자	더클래스효성(주)	-	-	-	3,331
	공덕개발	-	985	-	2,360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	15	23
	기 타	-	-	-	1
	소 계	-	985	15	5,715
기타	효성티앤씨(주)	141	894	12,150	3,359
	효성중공업(주)	-	360	-	1,166
	효성화학(주)	-	33	-	366
	효성트랜스월드(주)	-	-	555	3,433
	Hyosung USA Inc.	1	-	55	53
	Hyosung Dong Nai Co., Ltd.	1,041	-	13,073	-
	Hyosung Japan Co., Ltd.	-	-	-	15
	Hyosung Holdings USA, Inc.	276	-	-	62
	기 타	653	203	28	441
	소 계	2,112	1,490	25,861	8,895
합 계		30,945	5,608	50,481	16,424

주) 기타채권에는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채무에는 미지급금, 예수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정관 상에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상법과 정관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승인 사항
상법 상 이사회 결의사항 (정관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의 위임이 금지된 사항
정관 상 이사회 결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제3조) -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7조의2)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을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9조)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조합 등에 의한 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포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제10조) (발행주식 총수의 3% 범위 내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게 부여) -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설정(제12조) - 주주총회의 소집 및 명의개서 정지 또는 기준일 설정(제13조)

구 분	승인 사항
정관 상 이사회 결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14조) -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15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16조) -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제41조) (단,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 필요) - 중간배당 결의(제43조의2)
기타 법령 상 이사회 결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소규모 합병,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에 따라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 승인 -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이사의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이사의 경영감독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과 제542조의11 상 규율하고 있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회사이나,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 의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60%(이사 5인 중 3인 사외이사)로 하여 법령에서 규율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법 제542조의9에서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요건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의 승인을 받고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당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 의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 사업연도말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반기말, 사업연도말 연2회 보고하고 있는 등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관 34조에서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의4에 회사 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매월 10일 경 전월의 경영위원회 결의내용을 사외이사들에게 통지하고, 분기별 결산이사회 시 해당 기간의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당사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 역량을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Profit Design을 할 수 있는가”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GMC(Global Management Course)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후보군 중에서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관 제29조는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한 임원 후보자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후보자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19.1.29 ~ 31	사내	9	신임임원의 역할인식 및 경영역량 강화	-
2019.5.9,10,15,17	사내	130	재무에 대한 종합이해 및 경영 적용도 향상	-
2019.9.18, 26	사내	43	재무 심화사례 학습	-
2020.2.7 ~ 8 2020.2.14 ~ 15	사내	94	Semi MBA : 경영역량 향상 및 환경변화 대응	2개 그룹 운영

※ 효성첨단소재를 포함한 그룹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내부통제정책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행동규범, 내부통제체계,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준수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준법통제기준, 투자관리규정, 보안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2회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횡령, 금품수수, 문서위조 사례 및 청탁금지법 등의 법률위반 사례와 윤리교육을 전사 또는 조직별 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주요 활동 내역과 처리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담당부서와 사업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적시성 있고 정확한 공시 수행과 모니터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주)효성에서 운영하는 효성기업집단 공시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자료 작성 및 검토를 하여 기재사항 오류 등을 지주사와 Cross Check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상장사협의회 에서 주최하는 수시 및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 및 공시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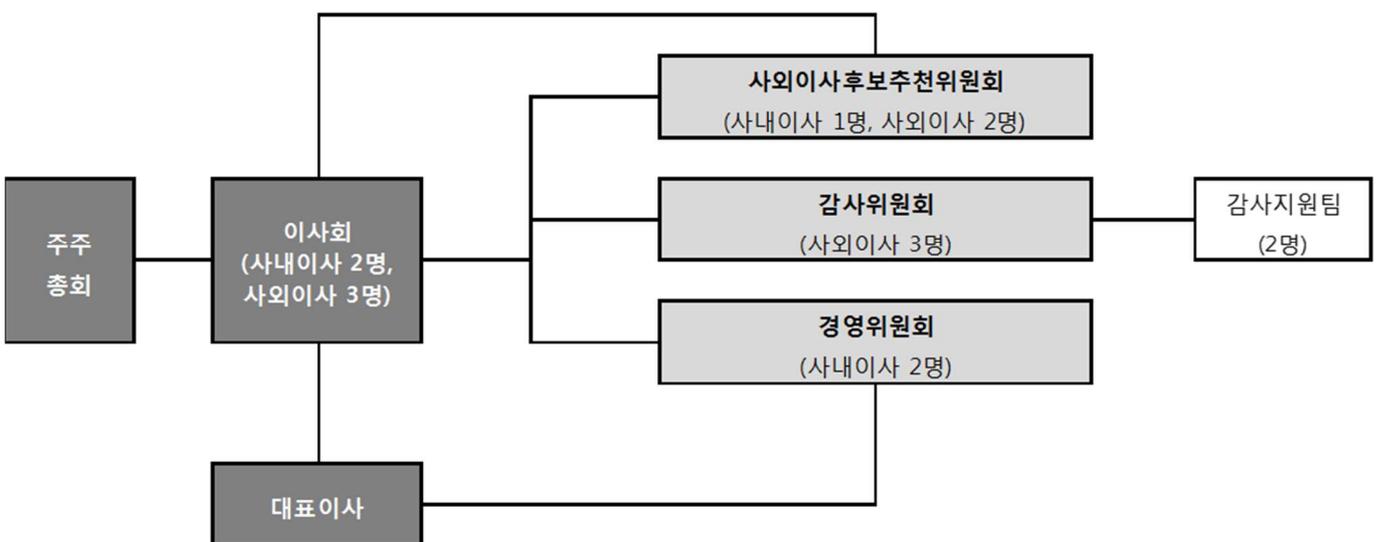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1항에 따라 최소 이사 원수를 반영한 것이고, 최대 인원을 16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사업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다수의 이사의 필요성과 이사 간 의견 수렴의 지연 문제 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절충하는 안입니다.

[효성첨단소재(주) 이사회 관련 조직도]



한편 당사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3명은 사외이사이며, 이사회 과반수 이상으로 상법상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2018년 6월 1일 회사 창립부터 임기를 시작하였고, 2020년 3월 19일 제2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3명 모두 재선임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1회 연임 중이며, 3명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독립성 제고뿐 아니라, 금번 연임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감사기능의 효율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3명 모두 상법 및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률, 회계·재무,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황정모	남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8. 6.1	2022. 3.18	기업 경영	前)㈜효성 가흥화섬법인 총경리, 타이어보강재PU장 겸 베트남법인장 現)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김승한	남	경영위원회 위원	2018. 6.1	2022. 3.18	기업 경영	前)화승네트웍스 유통무역사업 본부장, (주)효성 인테리어 PU장 現)효성첨단소재(주) Technical Yarn PU장 겸 인테리어 PU장 겸 아라미드사업단장
사외 이사	김동건	남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2018. 6.1	2022. 3.18	법률 (변호사)	前)서울고법원장 現)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한인구	남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2018. 6.1	2022. 3.18	회계 재무 (회계사)	前)한국경영학회 회장 現)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
	이상엽	남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8. 6.1	2022. 3.18	과학 기술 (과학자)	前)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現)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5명)를 재선임(연임 1회) 한 후, 2020년 3월 21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60%, 5명 중 3명)이 높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별도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이지만,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명 중 2명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3명 전원 사외이사)를 설치하여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위원회(사내이사 2명)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산하에 귀속시켜 각 소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A)	대표 위원	사외 이사	김동건	남	B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위원	사내 이사	황정모	남	C		
	위원	사외 이사	이상엽	남	B		
감사위원회 (총 3인) (B)	대표 위원	사외 이사	한인구	남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위원	사외 이사	김동건	남	A		
	위원	사외 이사	이상엽	남	A		
경영위원회 (총 2인) (C)	대표 위원	사내 이사	황정모	남	A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6.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7.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
	위원	사내 이사	김승한	남	-		

나.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성 제고 여부

이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며, 이사회 5명 중 3명이 사외이사(비중 60%),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이며,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매달 사외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관련 전반적인 사항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에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하기에 당사의 사외이사는 변호사, 회계사, 과학자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의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내 이사	황정모	2018.6.1	2022.3.18	2020.3.19	재선임	재직
	김승한	2018.6.1	2022.3.18	2020.3.19	재선임	재직
사외 이사	김동건	2018.6.1	2022.3.18	2020.3.19	재선임	재직
	한인구	2018.6.1	2022.3.18	2020.3.19	재선임	재직
	이상엽	2018.6.1	2022.3.18	2020.3.19	재선임	재직

나.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안에는 총 2명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황정모 사내이사는 ㈜효성 타이어보강재 PU장 등을 역임하며, 자동차 및 타이어 관련 산업에 대한 깊은 안목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승한 사내이사는 ㈜효성 인테리어 PU장을 역임하며, 자동차 내장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명이 당사의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이며, 서울고등법원장 및 법무법인 바른 대표 등을 역임한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고, 기업의 윤리경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인구 사외이사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회계사 자격 보유 및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및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사외이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및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기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과학분야 전문가로서, 세계 최고의 소재 전문기업을 목표로 하는 당사의 사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추천위원회 설치, 구성 및 활동내역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분야별로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 등을 유관 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67%)되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아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

한편,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에서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을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1일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제2기)에서는 개최 20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주주들이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 까지 진행되었던 주주총회 시, 이사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 고
		구분	성명		
2020.2.28 (주총 20일전)	2020.3.19	사내	황정모 김승한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사외	김동건 한인구 이상엽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이사회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 의견 반영 여부

당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라. 이사회 후보 추천 및 선임 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비고
이사회 후보 추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만 운영 중 (사내이사회 후보 추천위원회 미운영) - 사내이사는 이사회 의 추천으로 후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나, - 일정 수준 이상의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바, 사내이사 추천인으로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음.
집중 투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382조 2에서 규정하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에 대해, 정관상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는 바, - 집중투표제의 장·단점, 시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코자 함
주주총회 소집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 활동내역은 기재되나 사내이사의 활동내역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제출일 이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서면 통보 시 재선임 사내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첨부 예정임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 41명은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말하며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필요에 따라 소관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담당 임원을 말하며, 그 현황은 매 분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인원현황(미등기 인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인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황정모	남	부사장	등기인원	상근	대표이사
황윤연	남	부사장	미등기인원	상근	중국 산업자재 동사장
김치형	남	부사장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장
김승한	남	전무	등기인원	상근	Technical Yarn PU 장, 인테리어 PU 장 및 아라미드사업단장
조용수	남	전무	미등기인원	상근	경영전략실장
임진달	남	전무	미등기인원	상근	타이어보강재 PU 장
이한주	남	전무	미등기인원	상근	GST Global GmbH President
김경환	남	전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광남법인장
최송주	남	전무	미등기인원	상근	탄소재료사업단장
유선형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관리본부 담당
이양상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가흥화섬법인 TC 총경리
오덕호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GST Europe President
여예근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강선타이어코드부문 담당
주영돈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생산지원본부 담당
김민안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타이어보강재 PU 강선 글로벌 CTO
이종훈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구매 담당
전유숙	여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지원실장
박전진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탄소재료사업단 전주공장장
임성철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GST Global GmbH 영업 담당
신덕수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경영전략실
주영권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타이어보강재 PU 섬유 기술기획 담당
이주한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홍보 담당
이영준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타이어보강재 PU 섬유 총괄
임석주	남	상무	미등기인원	상근	재무실장
유영식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스판덱스 영업 담당
최학철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울산공장관리본부 관리 담당
이시순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가흥화섬법인 Film 부문 총경리
박찬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섬유타이어코드부문 담당
박병권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청도법인 생산 총경리
곽경훈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타이어보강재 PU 강선영업 담당
이태정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타이어보강재 PU 섬유영업 담당
박형민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경영전략실
윤석현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GST Global GmbH CFO
천병호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Technical Yarn PU 영업 담당
석병식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스판덱스 생산 담당
김병수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타이어보강재 PU 울산공장장
이정훈	남	상무보	미등기인원	상근	베트남법인 재무 담당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강영호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GST Changshu 법인장
김동건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한인구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이상엽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당사는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적 세부 지침을 담고 있는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부패 방지준수 규정 수립,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HR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 임원의 직속 기구인 HR 상담센터를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 사항에서부터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감사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현장 업무에서부터 각종 제보에 대한 조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 등을 통해 당사는 회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등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및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횡령·배임 경력이 있는 자는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바, 당사의 경우 횡령·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신규 선임 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또한, 당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 당사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선발요건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 선임 시 상법 상의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5월 29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사외이사와 당사간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 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김동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한인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상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 장기 재직 사외이사 존재 여부

2020년 5월 29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 기간과 관련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 사외이사 3인 모두 재직기간이 2년으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 초과 장기 재직 시 그 사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김동건	2년	해당사항 없음	2년	해당사항 없음
한인구	2년	해당사항 없음	2년	해당사항 없음
이상엽	2년	해당사항 없음	2년	해당사항 없음

다. 사외이사 선임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통한 결격요건 검증뿐만 아니라, 법무·인사 등 관련 부서의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상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 5월 29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 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김동건 (감사위원)	2018.6.1	2022.3.18	법무법인 천우변호사	-	-	-	-
한인구 (감사위원)	2018.6.1	2022.3.18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	-	-	-
이상엽 (감사위원)	2018.6.1	2022.3.18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	-	-	-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 여부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에, 사외이사의 위상 및 역할 상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를 인지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3명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2020년 4월부터 매분기 감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감사인과의 미팅을 통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운영현황

당사는 이사회 간사(재무실장)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이사회 : 자금팀, 감사위원회 : 감사지원팀 등)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교육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실시된 주요 사외이사 교육사항은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사항 및 감사위원회 역할(2019.12월 한영회계법인 실시) 및 타이어보강재 및 스판덱스 공장 견학(2020.1월 효성첨단소재 실시) 등 입니다. 한편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직무규정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규율하고 있어, 필요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후 사외이사만 참여 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충분한 제공 여부

당사는 앞서 설명한 사항 외에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先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추가적으로 질의 또는 보완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 시 국내외 경영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사무부서 또는 타부서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 시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재임 기간 중 담당 업무관련 실적·이사회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참여도)과 회의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참석률 및 활동 내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6월 1일 분할 설립 후 사외이사 재선임이 1회에 그쳐 사외이사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및 외부평가 등의 평가방법을 통하여 재선임 시 반영하는 절차 및 규정은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전문성·기여도·공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맞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 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이며, 향후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이 수립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기여도·공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보수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맞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제447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 6주 전의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과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2월 주주총회소집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후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호선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의 발생 또는 일정상 정기 이사회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8조에 따라 적어도 개최 1일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 시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10월말 경 개최되는 3분기 결산이사회 시 익년도 연간 이사회 일정을 이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조율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 의 일시, 장소 및 안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건수가 많은 정기이사회 의 경우 20~28일 전에, 안건수가 적은 임시이사회 의 경우 2~17일 전 통지하여 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의해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 이사회 소집 통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이사회 개최내역 및 안건통지 현황]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1. 제1기(2018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19.1.31	2019.1.3	5/5
		2.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3.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이사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가결				
	보고	1. 2018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실적 보고의 건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보고의 건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4.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의 건	보고						
5. 2018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보고						
2차	결의	1. 제1기(2018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19.2.21	2019.2.14	5/5
		2.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결				
	3. 제1기(2018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보고	1.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3차	결의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19.4.30	2019.4.8	5/5
	보고	1. 2019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2. 2019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보고				
4차	결의	1.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19.7.26	2019.7.1	5/5
		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3.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보고	1. 2019년 2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2. 효성첨단소재 Vision 및 중기 경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보고						
4. 2019년 2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보고						
5차	결의	1.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19.10.30	2019.10.7	4/5
		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1. 2019년 3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2. 2019년 3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보고				
6차	결의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19.12.12	2019.11.25	5/5

[2020년 이사회 개최내역 및 안건통지 현황]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1. 제2기(2019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0.1.31	2020.1.10	5/5
		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1.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2. 2019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보고				
2차	결의	1. 제2기(2019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2.5	2020.2.3	5/5
3차	결의	1. 제2기(2019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2.27	2019.2.20	5/5
		2. 제2기(2019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보고	1. 2019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실적 보고의 건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3.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의 건	보고				
4차	결의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황정모 대표이사	가결	임시	2020.3.21	2020.3.11	5/5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황정모 대표이사	가결				
		3. 사외이사후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김동건 이사, 이상엽 이사, 황정모 대표이사	가결				
		4.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황정모 대표이사, 김승한 이사	가결				
5차	보고	1. 2020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0.4.29	2020.4.9	5/5
		2. 첨단소재 부채비율 감축방안 보고의 건	보고				
		3. 2020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보고				

나. 이사회의 정기적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여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여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 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보존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재직중인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및 안건 찬성률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총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회,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5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44건의 안건(승인 22건, 보고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2019년 1~12월 97%, 2020년 1~5월까지 100%이며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12월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개최일자	2019.1.31	2019.2.21	2019.4.30	2019.7.26	2019.10.30	2019.12.12	
사내	황정모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승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동건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인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상엽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2020년 1~5월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자	2020.1.31	2020.2.5	2020.2.27	2020.3.21	2020.4.29	
사내	황정모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승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동건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인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상엽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편 당사의 3개 사업연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 (최근)	2018	2017		2019 (최근)	2018	2017
황정모	사내	2018.6.1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김승한	사내	2018.6.1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김동건	사외	2018.6.1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한인구	사외	2018.6.1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이상엽	사외	2018.6.1 ~ 현재	75	83.3	66.7	-	100	100	100	-

※ 2018년 6월 1일 분할 이후 각 사업연도별 개최된 이사회는 2018년 총 3회, 2019년 총 6회이며, 이상엽 이사는 2018년 및 2019년 각각 1회 불참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역할 및 구성 현황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 중에는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현황 및 주요 역할,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IV. 이사회 - 2. 이사회 구성의 (세부원칙 4-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각 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4에 의해 상임이사(사내이사 2인)로 구성됩니다. 동 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의 제고를 위해 전월 의결사항에 대해 매월 10일 경 사외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에서도 분기별 의결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 여부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기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 지 여부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0일 경 전월 결의사항에 대해 사외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 시 분기별 결의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에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감사 보조조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의 [V.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의 (세부원칙 9-②)]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이 예상될 때마다 위원회가 소집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0.02.27	3/3	결의사항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동건, 한인구, 이상엽	가결
2차	2020.03.21	3/3	결의사항	1. 대표위원 선임의 건 - 대표위원 : 김동건	가결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최근)	2018	2017
사외	김동건	100	-	100	-
사내	황정모	100	-	100	-
사외	이상엽	0	-	0	-

※ 2018년 6월 1일 분할 이후 각 사업연도별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18년 총 1회(대표위원 선임의 건), 개최되었으며, 2019년은 사외이사 임기 중으로 제1기 정기주주총회 시 이사선임 안건이 없어 개최되지 않음

(다) 경영위원회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제37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 4등에 따라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이사회 부의가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 4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월 결의한 사항에 대해 매월 10일 경 사외이사에게 보고하고, 정기이사회에서는 분기별 결의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은 총 81건(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중 61건, 2020년 1월 1일~5월 29일 중 20건)이며, 이 중 96%(78건)은 당사 차입금 조달 및 해외법인 차입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건입니다.

동 기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12월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전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01.02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차	2019.01.1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차	2019.02.27	2/2	결의사항	1. 2019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거래	가결
4차	2019.02.28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차	2019.03.06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6차	2019.03.08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7차	2019.03.14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8차	2019.03.19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9차	2019.03.21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0차	2019.04.17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1차	2019.04.29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2차	2019.05.02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3차	2019.05.07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4차	2019.05.17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5차	2019.05.2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6차	2019.05.24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7차	2019.05.29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8차	2019.05.3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9차	2019.05.31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0차	2019.06.05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1차	2019.06.1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2차	2019.06.13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3차	2019.06.28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4차	2019.07.11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5차	2019.07.30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6차	2019.08.02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7차	2019.08.26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8차	2019.08.27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9차	2019.08.29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0차	2019.08.3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1차	2019.09.02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32차	2019.09.2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3차	2019.09.27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4차	2019.09.30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5차	2019.10.18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6차	2019.11.04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7차	2019.11.14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8차	2019.11.15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9차	2019.11.28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40차	2019.11.29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41차	2019.12.03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3.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42차	2019.12.13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3차	2019.12.16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4차	2019.12.17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45차	2019.12.2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46차	2019.12.24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47차	2019.12.26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020년 1~5월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차	2020.01.02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 차	2020.01.16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 차	2020.02.27	2/2	결의사항	1. 2020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거래	가결
4 차	2020.03.05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5 차	2020.03.17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6 차	2020.03.18	2/2	결의사항	1.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7 차	2020.03.20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8 차	2020.03.21	2/2	결의사항	1.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 대표위원 황정모 대표이사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9 차	2020.04.22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0 차	2020.04.27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1 차	2020.04.28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2 차	2020.05.19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3 차	2020.05.21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14 차	2020.05.28	2/2	결의사항	1.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2.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최근)	2018	2017
사내	황정모	100	100	100	-
사내	김승한	100	100	100	-

※ 2018년 6월 1일 분할 이후 각 사업연도별 개최된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24회, 2019년 총 47회임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의 구성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36조, 이사회운영 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법령,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총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회계사, 변호사 및 과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직책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구분	성명		
대표 위원	사외이사	한인구	1993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 2007 ~ 2008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 2009 ~ 2011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 2011 ~ 2017 매일유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7 ~ 2018 한국경영학회 회장	회계사 (회계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김동건	2004 ~ 2005 서울고법원장 2012 ~ 2016 법무법인 바른 대표 2017 ~ 현재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변호사
위원	사외이사	이상엽	1994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2008 ~ 201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2013 ~ 2015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장 2017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장	과학자

한편, 당사 감사위원회 대표위원(한인구 사외이사)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美일리노이대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1990년) 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 대표위원의 경력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연구원이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바,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2018년 6월 1일 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을 동 직무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4.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한 감사위원들에게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 제공된 주요 교육사항으로서 2019.12월 한영회계법인의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사항 및 감사위원회 역할 교육 및 2020.1월 당사 타이어보강재 생산공장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사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 (감사지원팀)를 2018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 인력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및 제20조에 감사부설기구 책임자의 선임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및 2년 이내 이동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내부감사 인력 중 1명은 재무/감사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감사부설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설기구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	평균 근속연수	비고
감사지원팀	2명	차장/과장	2년	2018.6.1 임면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성명	현직	최종학력	선임일	결격요건
김진용	효성첨단소재 지원실	아주대학교 로스쿨	2019년 7월 26일	해당사항 없음

다.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당사 감사위원회의 보상은,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고,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하여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지급되었던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기타 사외이사 보수와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 지급 금액]

구분	인원수	보수 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	162.6백만원	54.2백만원	-

라. 독립성/전문성 확보 정책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의거 최소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위원회 개최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이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위원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부교육 참석 등을 안내하고, 2020년 4월부터는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감사위원회는 회계 내부 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회계 관련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 평가·보고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한편, 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대표위원은 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1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회,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5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24건의 안건(승인 9건, 보고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21일, 2020년 2월 27일에 각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12일에는 2020~2022년 사업연도 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1~12월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1.31	3/3	결의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의 건	가결
			보고사항	1. 제1기(2018.6.1~2018.12.31)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변경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4. 2019년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5.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보고의 건	보고
2차	2019.2.21	3/3	결의사항	1.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 제출의 건	가결
			결의사항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의 건	가결
3차	2019.2.21	3/3	결의사항	1. 제1기(2018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가결
4차	2019.4.30	3/3	보고사항	1. 2019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 2019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
5차	2019.07.26	3/3	보고사항	1. 2019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6차	2019.10.30	2/3	보고사항	1. 2019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7차	2019.12.12	3/3	결의사항	1.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2020~22년)	가결

[2020년 1~5월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0.1.31	3/3	보고사항	1. 2019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2차	2020.2.27	3/3	결의사항	1.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결의사항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의 건	가결
3차	2020.2.27	3/3	결의사항	1. 제2기(2019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가결
4차	2020.3.21	3/3	결의사항	1. 대표감사위원 선임의 건 → 한인구 이사	가결
5차	2020.4.29	3/3	보고사항	1. 2020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 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 계약에 대한 협의 및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3. 2020년 감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의 건	보고

당사는 매 감사위원회 종료 후 각 안건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감사위원회 안건, 경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월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감사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2019년 95%, 2020년 100%이며 개별 위원별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12월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비고
	개최일자	2019.1.31	2019.2.21	2019.2.21	2019.4.30	2019.7.26	2019.10.30	2019.12.12	
사외	김동건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인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상엽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2020년 1~5월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자	2020.1.31	2020.2.27	2020.2.27	2020.3.21	2020.4.29	
사외	김동건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인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상엽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또한,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위원별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최근)	2018	2017
사외	한인구	100	100	100	-
	김동건	100	100	100	-
	이상엽	76.2	85.7	66.7	-

※ 2018년 6월 1일 분할 이후 각 사업연도별 개최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총 3회, 2019년 총 7회이며, 이상엽 이사는 2018년 및 2019년 각각 1회 불참

나. 감사위원회의 성실한 감사업무 수행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업무감사를 위하여 정기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의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 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시, 각 회계법인에 감사제안 요청서를 발송 후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계약 조건(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및 감사계약을 체결하며, 선정 된 외부감사인과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일련의 그 과정을 문서화할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6월 1일 (주)효성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당사는 분할 전 (주)효성이 2017년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후 의결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지정 2년(2018.1.1 ~ 2019.12.31)을 조치 받았기 때문에, 분할회사인 당사 또한 2019년 사업연도까지 지정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20~22년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12일에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평가기준(감사수행 역량, 회계법인의 독립성, 감사수행 시 투입인력과 시간의 적정성, 용역비 등)에 따라 평가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이후 계약을 체결한 날(2020년 2월 14일)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선임사실을 공고(2020년 2월 21일)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사업연도까지 감사업무를 수행한 지정 감사인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당사 외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시, 각 회계법인에 감사제안 요청서를 발송 후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계약 조건(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22년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12일에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평가기준(감사수행 역량, 회계법인의 독립성, 감사수행 시 투입인력과 시간의 적정성, 용역비 등)에 따라 평가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고, 2020년 2월 14일에 감사계약을 체결 후 2020년 2월 21일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선정된 외부감사인과 감사인의 독립성 및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2020년 4월 29일 감사위원회 종료 후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 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 소통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5조 제1항~제3항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업무를 진행한 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 등을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및 핵심감사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새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과 감사위원회 종료 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마련하여 4월부터 경영진의 참석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동 회의를 통해 감사 계약 및 독립성, 연간 감사일정 등에 대해 공유하였고, 향후에는 핵심 감사사항 및 재무제표 검토 결과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9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현황]

개최 시기	외부감사인	방식	주요 논의 내용	비고
2019.4.23	삼덕회계법인	대면회의	회계기준 제/개정 내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등 논의	-
2019.10.30	삼덕회계법인	대면회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및 핵심 감사사항 등 관련 논의	-
2020.3.5	삼덕회계법인	서면회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핵심 감사사항 등 관련 논의	-
2020.4.29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감사계약 및 독립성, 연간 감사계획 등 관련 논의	-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 제4항~제6항에서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동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2회 개최하였으며, 각 정기주주총회 시 상법상 규율하고 있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각각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제출시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전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출시기 등]

구분	주총개최일	외부감사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시기	비고
제1기 정기주주총회	2019.3.15	삼덕회계법인	·별도 : 2019.1.31(주총 6주전 충족) ·연결 : 2020.2.14(주총 4주전 충족)	-
제2기 정기주주총회	2020.3.19	삼덕회계법인	·별도 : 2020.2.5(주총 6주전 충족) ·연결 : 2020.2.19(주총 4주전 충족)	-

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 의사소통 여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소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회의빈도가 분기별 1회 미만 이었습니다. 이에 2020년 4월부터 분기별 경영진의 참석없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 책임과 공헌 활동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취약 계층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가치의 실천이므로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2012년부터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에 매월 임직원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경영진을 포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성나눔봉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어린이가족 후원, 취약계층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후원사업(생산설비 교체, Com-bridge 사업 등) 등 취약 계층 자립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저소득층 대상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생필품 지원, 마을재생활동, 1사 1촌 농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직원들은 숭선수범을 통해 함께 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효성의 사회공헌은 국경을 뛰어 넘습니다. 베트남에서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주민을 치료하는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고위험환자 한국 초청 수술, 재난지역 긴급 구호 활동, 저소득국가 미니도서관 설립, 저개발지역 학교 컴퓨터 기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문화 예술 후원

당사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은 소외 계층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도 활발해 당사의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창덕궁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요마 &실크로드 앙상블 공연 후원 및, 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우수 연극단체 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신소재인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활용 예술작가 지원 및 소재 후원을 통해 새로운 예술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호국 보훈

당사는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흥제 선대회장의 산업보국 창업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효성그룹의 최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 현충탑 참배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창업 정신 계승의 일환입니다. 또, 매년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은 물론 '사랑의 독서 카페'에 책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보금자리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당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sustainability_report.do

(첨부 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 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주총 20일 전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		X	전자투표 도입하지 않음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20년 주총집중일(3/13, 20, 26, 27日) 외 3/19日 개최함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가능이익 없어 배당 無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GMC(Global Management Course)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관 제29조 선임절차 마련·운영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사외이사 비중(60%)이 큰 바, 독립성 문제 없음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정관에서 배제함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금지하는 절차가 있고 현재 임원선임 無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사외이사(3인) 1회 연임 중 (2018.6.1~현재)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2019.12월 한영회계법인의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사항 및 감사위원회 역할 교육 등	
	⑫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감사지원팀 설치·운영 중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대표감사위원 1인 총족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2호)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2020년 4월부터 분기별 1회 개최 중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 상 정보접근 등의 근거 마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2020.3.19)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2019.1.1 ~ 2019.12.31)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첨부 2) 관련 규정

당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① 정 관
- ② 이사회 운영규정
- ③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⑤ 준법통제기준
- ⑥ 공시정보관리 규정
- ⑦ 내부회계관리 규정
- ⑧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